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13. 10. 24

제안자 : 행정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마포구에서 직원후생 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여 마포구의회에 제출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 있어 “구청장은 직원후생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내용

“구청장은 직원후생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함(안 제4조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직원후생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서울
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구청장은 <u>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②(생략)</p> <p>③ 구청장은 직원후생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 -- <u>소속공무원-----</u> ----- ----- -----.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구청장은 <u>직원후생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u></p>